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1. **부가적 구성이 추가된 경우 그 해석과 이용침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특허권침해금지금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판결 요지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사안 해설
사안의 특허발명은 고기 등 음식물을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 조리하는 기구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모방한 제품들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침해라는 판정이 나오자, 피고들은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외에 원고들을 상대로 본 건 소송 및 여러 건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권리범위 확인사건들이 확정되면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후 무효심판에서 이루어진 정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축공”이 “관통형 축공”으로 한정됨으로써(정정발명 제1항), 원고 제품들 중 이에 해당하는 구성이 무엇인지, 여전히 정정발명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심은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 상단면, 회전편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 가능하도록 뚫린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하단에는 다각축과 연결되는 모터 등이 배치되어 있어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뚫린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정정발명 제1항의 구성요소 1(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과 관련한 기술적 특징, 즉 회전편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되는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짐으로써,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였다(위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제4항 독립항)의 종속항인 제2항의 구성요소였음). 대성판결은,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편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것이고, 정정발명 제1항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편(구성요소 2)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에는 ‘금속원통기둥’, ‘모터’,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편 하면 중앙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홀’이 형성되어 있는데,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홀은 하부베이스에 구비된 모터의 회전 동력을 회전편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고,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편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지면서 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 형태의 구성요소로 그 자체의 원면과 아랫면은 개방되어 있는 형상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홀’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등에 구비되거나 형성된 모터·다각축·다각홀,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모터의 회전 동력 전달 수단이나 기름배출수단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가지는 작용 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편을 교체하여 사용 가능)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고,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1의 ‘축공’을 ‘관통형 축공’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아래가 막히지 않고 뚫려있는 형상의 축공만을 권리범위로 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문제는 원고가 원고 제품들을 제작함에 있어, 회전편이 자동으로 회전하도록 모터 등 관련 구성을 추가하면서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축공에 해당하는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하고 모터와 연결된 다각축을 회전편의 하면 중앙의 축돌기 하부에 형성한 다각홀에 끼워넣어 모터의 회전력을 회전편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원고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속원통기둥의 하단이 이 모터·다각축·다각홀 등으로 막혀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 제품들에서 다각축이 구비된 모터 등은 자동회전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부가적 구조에 불과하고,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원통기둥만 ‘관통형 축공’의 대응 구조으로 파악해야 하며,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쪽에 위치한 모터 등을 제거하면 금속원통기둥 자체는 밑바닥이 막혀있지 아니한 채 하부가 뚫려있는 구조이므로 관통형 축공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 제품들은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뚫린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관통형 축공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① 원고 제품들은 모터의 회전 동력을 이용하여 회전편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것이고 그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의 일부 부품

구매 당시 구매자는 출처 혼동이 없었더라도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표로 인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

해당 사안에서는 리폼 후 제품이 전혀 달라 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리폼업자가 기존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그대로 사용해 가방을 제작한 경우 이는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제대로 표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모터 등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모터 등을 임의로 분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비 대상이 되는 침해제품에서의 구성을 무엇으로 특정할 것인지 는 그에 따라 침해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그 판단이 쉽지 않다. 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원심은, 금속원통기둥의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다각축과 연결되는 모터 등을 임의로 분리하여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대성판결은 명시적으로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홀’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라고 판단하고, 금속원통기둥 자체는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고 그 기능은 정정발명의 축공과 동일하므로 관통형 축공에 대응되는 구성을 금속원통기둥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하였다. 즉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비 대상이 되는 침해제품에서의 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침해제품의 구성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원고 제품들은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속원통기둥에 자동회전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부가적 구성(모터, 다각축·다각홀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위 이용관계(특허법 제98조)가 성립하여 특허의 이용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부가적 요소를 추가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작용 효과가 침해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 이용침해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이용침해의 법리와 관련하여, 이는 일반적인 침해판단 과정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굳이 이용침해를 침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특허 사안과 같이 특정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침해제품의 구성을 분리

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구성으로 보고, 이러한 부가적 요소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실현하고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침해 여부 판단을 보다 체계적,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용침해 법리의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성판결은 이러한 이용침해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침해제품의 구성은 해당 구성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2. **명품가방 리폼영업자의 상표침해 여부**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상표권침해금지 등

판결 요지
명품가방 리폼영업자인 피고가 리폼작업에 의해 제작한 제품은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업으로 사용한 것이며,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원고 상표들은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리폼 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다.

사안 해설
피고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유자들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중고가방을 간네반아, 그 윈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개수, 크기, 용적, 형태, 기능 등이 다른 ‘리폼후 제품’을 제작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였다. 리폼 후 제품은 원고가 실제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다른 원고가방 등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았고, 리폼 주문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폼 후 제품의 사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폼 후 제품의 디자인을 선택한다. 대성판결은 명품가방 리폼영업자가 상표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쟁점을 망라하고 있는바, 대성판결의 판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하려면 그 물품 자체가 객관적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장차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리폼 후 제품의 상품성 긍정).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상표가 새로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상 위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리폼이 단순한 수선이라고 평가될 경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피고는 전 제품을 완전히 해체하여 절단한 다음 이를 원자재로 재활용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등의 공정을 거쳐 리폼 전 제품과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종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선 등과 구별되는바, 피고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이고, 이를 리폼／

구성은 해당구성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해야

＼, 주문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품의 인도’를 한 것이다. 리폼 전 제품 소유자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역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그의 신분은 비업무용 소비자이므로 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가방의 수선,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리폼 주문자를 상대로 독립하여 영업으로 리폼 후 제품을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표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상표가 출처표시를 위해 상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창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자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창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표들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크고,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외부 원단에 이 사건 상표들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리폼 후 제품을 원고 가방과 비교할 때 형태, 상표의 위치 등이 유사하고 리폼주문자의 주문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마치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품의 가격, 판매대상,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상표를 출처표시를 위해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은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는 리폼 전후 제품이 전혀 달라 상표권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대성판결은 리폼영업자가 리폼 후 제품에 별도

의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한 사실이 없더라도 원단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기존 가방을 그대로 사용하여 리폼 후 제품에도 그대로 상표가 표시되는 경우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사용을 위해 상품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가 직접 리폼을 하는 행위와 달리, 최종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리폼행위는 업무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였다.

3. **선형 특허무효사건과 후행 권리범위확인 사건간의 금반언 원칙 적용여부**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하11593
권리범위확인

판결 요지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한정 소극)

사안 해설
대성판결은 소송절차에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증거 조사 결과에 맞추어 주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한 소송행위를 뒤에 취소·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어,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민사소송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송상의 모순된 주장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동일한 특허에 관한 종전 무효사건에서 했던 청구범위 해석 주장과 내용 및 범위를 달리하는 주장을 후속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종전 무효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한 것일 뿐 그 해석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피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법원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기속되지 않으며, ③ 출원과정에서와 달리,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장은 그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대세적 의사 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의 주장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출원결과 금반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허 소송에 있어서 민사상 대원칙인 신의칙은 주로 출원과정에서 행한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후행 심판·소송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위 포대금반언 원칙의 형태로 적용되는데, 대상 판결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정해지는 출원과 정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주장을 제출·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한다고 볼 수 없는 소송절차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소송절차에서는 출원결과 금반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금반언 원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하였다.

4.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원파일의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부당이득반환 등

판결 요지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

사안 해설
사안에서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 A가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으로 매장 등에 공공송신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공연은 제외됨)을 체결하였고, A는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

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곡·매열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하였다.

피고 매장 운영자가 매장에서 재생장치를 통해 A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데, 사안에서는 이것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위 규정상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용 판매용 음반을 복제한 음반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성판결은 공연권이 제한되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있어서 그 시간적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음반이 발행될 때가 아니라,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는 해당 복제 당시의 목적이 판매용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공연권이 제한되는 판매용 음반의 시간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시를 하였다.

법률신문 법률실무 교육콘텐츠

2025 리뉴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실무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 함양과 법적 이슈를 확인하고, 위수탁 거래시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학습하고자 합니다.

Lecture

1강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

2강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

3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4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5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6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7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8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9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

10강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1강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12강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법무법인(유) 비른 구성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공정거래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NA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